

동북아 주요국의 중재법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Arbitration Law of Some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김 석 철*
Suk-Chul Kim

〈목 차〉

- I. 서 론
- II. 국가별 중재법제 비교분석
- III. 요약 및 시사점
- IV. 결 론

주제어 : 중재제도, 동북아시아, 중재법, 중재기관, 중재대상, 중재합의

*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재제도의 기원은 고대 인류 국가의 탄생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인류 국가는 현대적 의미의 사법 국가 시대가 아닌 부족장의 조정자에 의한 통치 사회로 오늘날의 중재와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인류 사회는 부족 간의 약속과 관습, 그리고 지도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통치한 시대였다. 부족 내에서의 다툼은 혈족간의 문제로서 부족의 관습에 따른 부족장의 우의적인 조정이 전제가 되었을 것이며, 부족 간 다툼은 상호간의 약속과 부족장간의 협의 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함으로써 평화를 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재제도로 추정되는 기록상의 제도는 B.C.4세기경의 그리스 도시국가시대의 2가지 제도이다. 하나는 심판관이 조정 법원을 조직하여 일반법에 따라 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재판소에 이관 하거나 조정 후에 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늘날 조정전치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중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재인이 자유의사로 판정 할 수 있으며 판정은 최종적이어서 법원에 상소 없는 제도로서 오늘날 중재와 유사하다. 그리스 시대에 이어 로마시대는 더욱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즉, 로마법에 의한 민사 소송절차의 실체가 오늘날 중재절차와 유사하다.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여 민간 심판관을 선정하고 국가의 감독하에 심판관은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로써 오늘날 중재의 법적 효시라고 할 수 있겠다.

중재사건해결에 대한 기록은 그리스 도시 국가시대에 국경, 식민지 및 영토의 소유권, 침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타국에 빌려준 돈의 청구 등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 것이 최초이다¹⁾. 최초의 중재사건은 일국의 국내 문제가 아닌 국가 간의 재산과 영토 분쟁이었으며 오늘날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 등에 관한 재산상의 분쟁을 중재제도로 해결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라 여겨진다.

국가 간의 교역은 재산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활성화 될 수 없다. 수출대금회수, 불량수입품의 손해청구, 투자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자금회수 등 우발적이거나 고의적이거나 불분하고 이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기업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은 지금까지 이러한 교역상의 안전이 구축될 수 없었던 냉전지역이었다. 구 소련과 중국, 북한이라는 공산주의와 미국의 지원에 의한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 진영이 대립해 왔으며 특히 남한과 북한의 분단은 지구상 최고의 대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

1) C.K. Wehringer. 「Arbitration Percepts and Principle」, Ocean Publication. 1969. p5.

즘은 소련의 붕괴로 이념에 의한 냉전시대는 끝이 났으며, 남북한간에도 화해협력을 위하여 경제협력 문제가 진전되어 남북철도개통도 논의되고 있다. 동북아의 철도운송에 의한 교역의 시대가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로서 중재제도등 공통적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주요국가인 한국, 중국, 러시아, 조선, 일본의 중재법을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국가자체에서 타국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단일 중재법 제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재법을 통일화 하는 등 동북아 국가 간의 무역, 투자에 대한 안정장치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국가들의 교역 활성을 모색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지금까지 중국, 북한, 일본과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이 있다. 처음에는 국가간 논문보다는 특정 국가의 중재제도와 관련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즉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과 분쟁해결연구](김병준, 고려대박사논문, 1994),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성백영, 한중법학회 제18회 학술발표논문, 1998.), [중국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이주원,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 2005.12.)가 있다.

양국간 관련 논문으로써, [상사분쟁해결촉진을 위한 한,중 중재기관간 협력방안](김상호, 한국중재학회 중국청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4)은 기관간 협력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칭따오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재절차 통일화에 관한연구”(김석철,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2005.8)은 중국 칭따오 중재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비교연구로서 중재절차가 중심이다. “한·일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고찰”(최석범 외2인, 중재연구 제16권 제1권, 2006.3)은 일본중재법상의 중재 판정에 대한 내용이다.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한,중 조정제도의 비교연구](신군제,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2004.8.)는 중국의 조정제도를 소개하고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중국 조정제도를 분석설명하고 이의 내용에 대해 유의할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자간 논문으로는 “남북한 및 중국 중재제도의 비교연구(신군제, 이주원. 중재연구 제17권2호, 2007.8.)가 있다. 주요 차이는 비교대상국가 3개국인데 비하여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전체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주요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비교인데 비하여 중재법상의 규정에 대한 정밀 비교분석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통일화 방안을 제시한 점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서론에 이어 각국의 중재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특징을 도출하였다. 비교 분석 방법은 동북아 국가들인 한국, 중국, 러시아, 조선, 일본을 대상국가로 하

고, 일부 중재규칙 포함하여 중재법상의 내용으로 한정 하였으며, 비교 제도는 중재에 있어 비중이 높은 15가지 영역 즉, 중재법의 종류, 중재기관, 중재법 구성, 중재대상, 중재합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지 결정, 중재심리, 증거조사와 법원협조, 준거법, 중재 판정부의사결정, 중재판정형식과 내용,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취소의 소,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등 15개 분야로 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중재에 의한 공통 분쟁 해결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중재법 통일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후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국가별 중재법제 비교분석

1. 중재제도기반

(1) 중재법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조선
중재법	중재법	중재법	연방중재법원법(국내) 연방국제상사중재법(국제)	대외경제중재법

※본 표는 중재법 분석 후 연구자가 작성한 것임

한국·일본·중국은 중재법으로 국내,외 중재를 관장하고 있다.²⁾ 그러나 러시아는 러시아 연방중재법원법(The Federal Law on Arbitration Courts adopted on 24 July 2002)은 국내중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 국제상사중재법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In Force 14 August. 1993)은 국제중재를 관장하고 있어 2개의 법에 의하여 국내 및 국제 중재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³⁾ 그리고 조선은 국내거래 중재는 관련법이 없으며 대외 경제중재법 (1999.7.21) 에 의해 국제거래만을 중재로 관리 하고 있다.⁴⁾ 중재법 제정 현황은 국가간의 차이가 있다.

(2) 중재기관

한국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국내의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자

2) 한국, 일본, 중국 중재법.

3) Global Arbitration Review. The European Arbitration Review 2007 Section2 : Country Chapter Russia. Legal Framework..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3항에서 ”이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중재법에 의해 정부보조를 받는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며 국내·외 상사분쟁을 관장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대한상사중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상사중재관장) - Japan Shipping Exchange Inc.(해사중재관장) - The Central And Perfectual Tribunal For The Settlement Of Construction Work Dispute(건설중재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혹은 성, 자치시 중재위원회(국내중재관장)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국제중재관장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CMAC);해사중재관장
	러시아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bitrazhniye Soudy (Arbitration Court)(국내중재관장) - The Cour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상사중재관장) - The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해사중재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국제무역중재관장) - 조선해사중재위원회 (해사중재관장)

※본 도표는 연구자가 작성한 것임

일본 중재기관은 중재법에서 중재기관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중재법에 의해 중재를 관장 하는 중재기관은 대표적으로 3개 기관이 있다.

일본해운집회소 (Japan Shipping Exchange Inc.)는 영국해운거래소와 업무 협조 등으로 1921년 설립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기관이다. 370개 이상의 해운회사가 회원이며 비정부 비영리기관의 해사 분쟁 중재기관이다.⁵⁾ 건설공사 분쟁해결을 위한 중앙 및 지방 중재 관정부 (The Central and Prefectual Tribunal for the Settlement of Construction Work Disputes)는 건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49년 제정된 건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 분쟁을 알선·조정·중재로 해결하고 있으며 건설성 중앙과 각 지방현에 설치해 두고 있으며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⁶⁾

일본 국제상사중재협회(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는 경제 산업성에

5)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c. HOME, Organization Profile. What is JSE..

6) 박영실,김석철 (국제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004.3 p.117.

서 인가 받아 1953년 발족된 중재기관으로 국제상거래분쟁을 관장하고 있다. 7)

중국 중재기관은 중재법에 따라 국내중재기관과 섭외중재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국내중재기관인 지역단위별 중재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직할시, 성, 그리고 자치구시에서 행정구역별로 해당 행정시의 협조로 주무 또는 상업회의소가 설립할 수 있다.⁸⁾ 동 위원회는 행정기구로부터 그리고 위원회 상호간에도 예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구다.⁹⁾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국제중재도 관장하고 있으나 법과 규칙은 국내중재가 중심이다. 전국의 각 지역 중재위원회가 회원인 중재협회는 회원 중재기구의 자율 감독기관이다.¹⁰⁾

중국 섭외 중재는 국제중재를 뜻하며 중재기관은 중국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의 결정으로 1954.5.6 설립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CIETAC)와 중국국제상업회의소가 설립한 중국해사중재위원회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 CMAC)가 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국제경제와 무역 관련 분쟁을 관장하며 중국해사중재위원회는 운송과 해운관련분쟁을 관장한다.¹¹⁾ 중국은 중재법은 하나이나 중재기관은 3원화 되어 있다.

러시아중재기관은 중국과 비슷하게 국내중재기관과 국제중재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국내중재는 2002.7.24 채택한 “연방 중재법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연방 중재법원이 관장한다. 연방 중재법원은 국내분쟁을 관장하며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제분쟁은 관할하지 않는다. 러시아 연방 중재법원 (Abitrazh Courts)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임하는 중재법원이 아닌 국내 모든 상사와 몇몇 행정 분쟁을 관할하는 연방 상사법원조직¹²⁾으로 일반적인 중재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국제분쟁을 관할하는 중재기관은 러시아 연방 상공회소 내에 있는 국제상사중재법원(ICCA)과 해사중재위원회(MAC)가 있다. 국제상사 중재법원은 1934년 소련의 외국중재위원회(Foreign Arbitration commission)을 계승하였으며, 2006년3월 UNCITRAL MODEL LAW에 근거한 중재 규칙을 채택하였다. 모스크바 국제 상사중재법원에서는 연간 700여건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각 지방 상공회에서도 국제상사중재법원이 설치되어 있다.¹³⁾

7) 박기원·김석철, 「국제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004.3 p.117-118.

8) 중국 중재법 제10조 “중재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직할시, 성 그리고 자치구 인민 정부 소재지의 시나 다른 지역의 시에 설립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별로 설립한다. 중재위원회는 해당시의 협조를 받아 주무부서 또는 상업회의소가 설립한다. 중재위원회는 해당 직할시, 성 그리고 시의 사업부에 등록해야 한다.

9) 제 14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구에 예속되지 않으며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중재위원회 상호간에도 예속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

10) 제15조 “중국 중재위원회는 모든 개별 중재위원회를 회원으로 하는 사회 단체법인이다. 중재위원회, 구성원, 중재인에 대한 감독을 맡는 자율기구다.

11) 중국 중재법 제 VII장 섭외 중재에 관한 특별규정 제 65조에서 본 장의 규정은 섭외경제, 무역, 운송 그리고 해운관련분쟁에 적용된다. 제 66조에서 중국국제상업회의소는 섭외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섭외 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및 위원은 중국 국제 상업회의소가 임명한다.

12) <http://www.globalarbitrationreview.com/handbook/3/section/6/cha> 2007.7.29.

13)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urt at the Chamber and Industry of the Russia Federation. Arbitration Institutes and law.

러시아 해사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국제상사 중재법원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스크바 등 전국에 걸쳐 각 지역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되어 있다.¹⁴⁾

조선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가 있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투자·서비스 관련 분쟁을 관할하며,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해난구조·공동해손과 같은 분쟁을 관할한다.¹⁵⁾

(3) 중재법 구성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조선
1장	총칙 1조~7조	총칙 1조~12조	총칙 1조~9조	총칙 1조~6조	대의경제중재법의 기본 1조~7조
2장	중재합의 8조~10조	중재합의 13조~15조	중재위원회와 협회 10조~15조	중재합의 7조~9조	중재제기 8조~ 17조
3장	중재판정부 11조~18조	중재인 16조~22조	중재합의 16조~20조	판정부구성 10조~15조	중재심리 18조~34조
4장	중재절차 19조~28조	중재판정부의 특별권한 23조~24조	1절 신청과 수리 21조~29조 2절 중재판정부 구성 30조~38조 3절 심리및판정 39조~51조	중재판정부 관할권 16조~17조	판정과 집행 35조~43조
5장	중재판정 29조~34조	중재절차개시및 심리 25조~35조	중재판정 취소의 소 58조~61조	중재절차진행 18조~27조	
6장	중재판정의 효력 불복 35조~36조	중재판정 및 절차종료 36조~43조	중재판정집행 62조~64조	중재판정과 절차종료 28조~33조	
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37조~39조	중재판정의 취소 44조	협의중재 65조~73조	중재판정의 취소 34조	
8장	보칙 40조~41조 부칙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45조~46조	부칙 74~80조	판정의 승인과 집행 35조~36조	
9장		잡칙 47조~49조			
10장		별칙 50조~55조			

※본 도표는 연구자가 작성한 것임

14) The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At the Chamber and Industry of the Russia Federation.

15) 조선대의경제중재법 제2조 “대의경제분쟁의 해결은 조선국제무역중재 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 같은 중재위원회가 한다. 조선국제무역 중재위원회는 무역,투자,봉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선 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해난구조,공동해손 같은 분쟁을 심리해결한다.

중재법 구성은 한국은 8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중재법에 없는 중재인 보수와 중재비용에 대한 잡칙, 그리고 뇌물수수와 관련된 벌칙을 규정한 2개의 장이 추가되어 있다. 중국은 8장으로 한국에 없는 중재위원회와 협회에 대한 것과 섭의중재에 대해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보칙과 부칙이 없을 뿐 본내용은 한국과 거의 같다. 조선은 대외 경제 중재법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비교적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

상기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일본, 러시아는 법조항의 규정이 UN모델중재법을 채택하고 있어 비슷하다. 그리고 중국은 법 구성을 다소 달리하고 있으며 조선은 꼭 필요한 기본적 내용만 선언적으로 담고 있어 구체성에선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2. 중재대상과 중재 합의

(1) 중재대상

중재 대상은 한국중재법은 사법상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¹⁶⁾ 현재 혹은 장래에 발생할 분쟁 모두가 중재의 대상이 되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도 그 대상이 된다.¹⁷⁾

일본은 법에서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는 민사상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현행 혹은 장래 발생할 분쟁도 대상이며,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도 그 대상이다.¹⁸⁾

중국 중재법은 경제적 분쟁으로서, 국민·법인·경제단체간의 계약상 분쟁과 재산권 분쟁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혼인·입양·후견·부양 및 상속 관련분쟁과 행정기관관련 분쟁은 제외대상이다. 그리고 현행 혹은 장래 발생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되며, 전부 또는 일부분쟁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⁹⁾

러시아는 러시아연방국제상사중재법은 국제상사중재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거래분쟁은 ① 적어도 어느 일방의 사업장이 외국에 소재하는 조건에서 외국무역과정과 기타 국제경제구축에서 발생하는 계약과 민법관계로부터의 분쟁, ② 외국투자단체,기업, 러시아 국가내에 설립된

16) 한국 중재법 제1조(목적) 이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 신속하게 해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7) 한국중재법 제3조(정의) 제2호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18) 일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이법률에서 중재합의란 이미 발생한 민사상의 분쟁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일정한 법률관계(계약에 기한 것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는다)에 관한 민사상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결을

19) 중국중재법 제1조, 제2조, 제3조.

국제단체와 기구들간에 발생하는 분쟁, ③ 이들 기업,단체기구의 참여자간의 분쟁, ④ 그러한 참여자와 기타 러시아연방법의 지배를 받는자간의 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⁰⁾ 동법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회부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¹⁾ 따라서, 러시아는 국제간의 상거래로서 계약과 민법관련 분쟁이며, 현존 및 장래분쟁과 전부 및 일부중재가 중재대상이다.

조선은 대외경제중재법에서 대외경제분쟁해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외경제로 무역·투자·서비스·해상수송·해난구조·공동해손 등의 분쟁을 예시하고 있다. 분쟁당사자로는 ①조선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기업사이의 분쟁, ②조선기관 기업소·단체와 외국인 투자기업사이의 분쟁, ③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사이의 분쟁, ④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사의 분쟁, ⑤외국기업과 외국기업사이의 분쟁, ⑥조선기관·기업소·단체·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해외조선동포·외국인사이에 생긴 분쟁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²²⁾ 그리고 중재합의 조항에 계약서상의 중재조항과 발생 후 중재계약을 인정하고 있어 현존 혹은 장래분쟁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전부 혹은 일부분쟁은 규정이 없다.

(2) 중재합의 방식

한국은 중재법에서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해야 한다. 동법에서 서면 중재합의로 간주되는 합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²³⁾

- ①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 ②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으로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 ③ 일방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중재조항을 포함한 다른 서면계약을 본 계약의 일부로 인용하는 경우

일본은 일본중재법에서 순서나 표기 방법에 있어서 한국과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국과 동일하다.²⁴⁾

중국은 중재법에서 중재합의는 ①계약 중에 삽입된 중재조항, ②분쟁 발생 전 또는 후에 체결된 서면중재합의의 경우다. 그리고 중재합의서에는 중재신청의 의사표시·중재의 대상·중재위원회의 지정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 동법에서는 한국과 일본

20) 러시아 연방국제상사중재법 제2조.

21) 러시아 연방국제상사중재법 제7조1항.

22) 조선 대외 경제중재법 제1조 제2조 제4조.

23) 한국 중재법 제8조 (중재합의 방식).

24) 일본 중재법 제13조 (중재합의의 효력등).

처럼 서면중재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중국 CIETAC의 중재규칙에는²⁶⁾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 연방국제상사중재법에서의 중재합의 방식은 한국 및 일본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²⁷⁾

조선 대외중재법에서의 중재합의 방식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서면합의는 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이나 발생 후 들이 맺은 중재계약이 속한다 라고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다.²⁸⁾ 서신, 전보, 전신, 모사 전송 교환 등에 대해서도 한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못하다.

3. 중재인 및 중재심리

(1) 중재인 선정

한국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며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당사자합의로 정하며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 선정방법은 단독 중재인 선정방법은 일방으로부터 중재인 선정은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합의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이 선정을 한다. 3인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나머지 1인을 합의 선정한다. 일방의 중재인 선정 요구 후 30일 이내에 타방이 중재인 1인을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3의 중재인을 합의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도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선정한다. 그리고 중재인 선정 방법을 합의하여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는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

일본 중재법에서는 당사자의 수가 2이고 중재인이 1인 혹은 3인의 경우에는 한국과 동일하다. 그리고 당사자가 3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한국은 그 규정이 없어 일본중재법에서는 당사자간에 중재인 선임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법원이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¹⁾한국에는 없는 규정이다.

중국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을 1인 혹은 3인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3인 중재의 경우는 의장 중재인 1인을 둔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³²⁾구체적인 선정방법은 법에서는

25) 중국 중재법 제16조.

26)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 중재규칙 제5조.

27) 러시아 연방국제상사중재법 제7조.

28) 조선 대외경제중재법 제5조.

29) 한국 중재법 제11조(중재인의 수).

30) 한국 중재법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제1항, 제2항, 제3장, 제4장.

31) 일본 중재법 제16조(중재인의 수), 제17조(중재인의 선임).

규정하지 않고 있다. CIETAC 중재규칙에서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³³⁾ 단독 중재인 선임은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1인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3인 중재의 경우 각각 당사자가 1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해야 하며 제3중재인은 당사자들이 합의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야 한다.³⁴⁾ 당사자들이 중재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⁵⁾

러시아 연방국제상사중재법에서는 당사자 혹은 선정된 2인 중재인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국은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선정하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중재인 수의 결정과 중재인 선정 방법은 한국과 동일하다.³⁶⁾

조선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⁷⁾ 중재인 선정도 당사자가 합의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 내에 합의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중재지 결정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간의 편의와 당해사건에 대한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그리고 중재인들간의 협의, 증인, 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 물건·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등은 중재지의 적절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⁸⁾

일본중재법의 중재지 관련 내용은 한국과 그 표현까지도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중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일본은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는 대신 제3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증인이 제3자에 해당되므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³⁹⁾

중국 중재법에는 중재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CIETAC 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CIETAC 본부 또는 지부의 주소지가 되며,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하

32) 중국 중재법 제30조.

33) CIETAC 중재규칙 제20조.

34) 중국 중재법 제31조.

35) 중국 중재법 제32조.

36) 러시아 연방 국제 상사 중재법 제10조 및 제11조.

37) 조선 대외경제중재법 제21조 및 제22조.

38) 한국 중재법 제21조.

39) 일본 중재법 제28조.

고 있다.⁴⁰⁾

러시아 연방 국제상사중재법에서는 한국 중재법과 동일하다.⁴¹⁾

조선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중재 장소는 중재판정부가 정하도록 규정⁴²⁾하고 있으며 당사자 요구에 따라 소재지 밖의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⁴³⁾

(3) 중재심리와 당사자 해태

한국 중재법에서는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구술심리 혹은 서면심리를 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요청하면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구술심리기일 등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방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기타자료는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하며,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 또는 서증은 양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⁴⁴⁾

당사자의 해태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방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간내에 서증제시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계속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⁴⁵⁾

일본 중재법에서는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위해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단 일방당사자가 감정인에 대한 구술심리요구 기타 구술심리 신청을 한 때에는 구술심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⁶⁾ 일본은 서면심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구술심리도 꼭 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닌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선택 규정을 두고 있어 심리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중재실무상 구술심리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심리 일수 밖에 없으므로 한국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술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일방 당사자의 준비서면 등의 타방당사자 통지, 감정서, 서증등의 양당사자 통지등의 규정은 한국과 동일하다.

당사자의 해태로서, 신청인이 기한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일방당사자의 불출석 및 서증미제시의 경우는 한국과 동일하다.⁴⁷⁾

40) 중국 CIETAC 중재규칙 제31조.

41) 러시아 연방 국제상사중재법 제20조.

42) 조선 대외경제중재법 제25조.

43) 조선 대외경제중재법 제26조.

44) 한국 중재법 제25조(심리).

45) 한국 중재법 제26조(일방당사자의 불출석).

46) 일본 중재법 제32조(심리방법).

47) 일본 중재법 제33조.

중국 중재법은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개최해야 하며 구술심리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서, 답변서 및 기타 서류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⁴⁸⁾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에 정한 기한 내에 당사자들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해야 한다⁴⁹⁾. 신청인이 심리에 불참하거나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심리 중에 퇴장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결석으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⁵⁰⁾ 심리방법은 내용적으로는 한국과 같다.

당사자 해태로서 한국과의 차이점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중재철회로 보는 것은 동일하나 중국은 신청인의 심리불출석, 심리 중 퇴장도 중재철회로 보나 한국은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일방 당사자의 준비서면 등의 타방 당사자 통지, 감정서, 서증 등의 양 당사자 통지에 대해 법에는 규정은 없으며,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신청서류 피신청인 송부, 중재인과 당사자 모두에게 보낼 부수를 요구하고 있다.⁵¹⁾

러시아 연방 국제상사중재법에서의 규정은 구두심리, 심리통지, 일방당사자 준비서면 등 타방당사자통지, 감정서 등의 양방당사자 통지 일방당사자 해태 등에 대한 내용이 한국과 동일하다.⁵²⁾

조선 대외경제중재법은 중재심리 날자와 시간은 중재위원회가 정하여 심리개시 30일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⁵³⁾ 그리고 심리개시를 선언하고, 신청자에게 청구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신청자에게 답변을 하게하고, 심리를 한 다음 서로 물어보게 하도록 하고 있다.⁵⁴⁾ 증인이나 감정인의 출석과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⁵⁾ 조선의 경우 서면심리규정이 없고, 구두 심리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서류통지규정은 있으나 일방당사자의 해태의 경우에 대비한 규정은 없어 중재신청 후에 어느 일방이 심리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 할 수 있다.

(4) 증거조사와 법원 협조

중재에 있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협조를 얻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다 합리적인 중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비용을 수탁법원에 납부하고 증거조사를 촉탁할수 있으며, 수

48) 중국 중재법 제39조.

49) 중국 중재법 제41조.

50) 중국 중재법 제42조.

51) 중국 CIETAC 중재규칙 제11조와 제15조.

52) 러시아 연방 국제상사중재법 제24조.

53) 조선 대외경제중재법 제25조.

54) 조선 대외경제중재법 제28조.

55) 조선 대외경제중재법 제29조.

탁법원은 증거조사기록을 지체없이 중재판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⁶⁾

일본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촉탁, 증인신문, 감정, 서증 및 검증에 대하여 해당자 소재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의 증거조사 실시시에 중재인은 문서를 열독하고 검증의 목적을 검증 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비하여 그 대상도 세분화 하고 있으며 중재인이 법원의 증거 조사실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⁷⁾

중국 중재법에서는 관할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증거 조사 의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러시아 연방 국제상사중재법에서는 한국과 동일하게 중재판정부나 중재판정부의 승인을 얻은 일방당사자가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러시아 연방 법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서면상의 증거를 포함하여 수집된 증거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⁸⁾

조선 대외경제 중재법에서는 중국과 같이 증거 보전 신청은 해당재판기관에 의뢰 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를 위한 법원의 협조에 대한 규정은 없다.

4. 중재판정

(1) 준거법

한국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하며, 지정이 없는 경우는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중재판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형편과 선에 의해 계약에 따라 판단하며 상관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⁹⁾

일본 중재법은 한국중재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⁶⁰⁾

중국 중재법에서는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러시아 연방 국제상사중재법에서는 한국 및 일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⁶¹⁾

조선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중국과 같이 준거법 조항이 없다.

56) 한국 중재법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57) 일본 중재법 제35조(법원에 의해 실시하는 증거조사).

58) 러시아 연방 국제상사중재법 제27조.

59) 한국 중재법 제29조.

60) 일본 중재법 제36조.

61) 러시아 연방 국제상사중재법 제28조.

(2) 중재판정부 의사결정

한국 중재법에서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이상 결의로 결정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의장 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⁶²⁾

일본 중재법의 규정은 한국과 동일하다.⁶³⁾

중국 중재법은 다수결로 결정하며 소수의견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다수결이 이루어지는 않는 경우에는 의장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⁶⁴⁾

러시아 국제상사중재법에서는 한국법과 내용이 같다.⁶⁵⁾

조선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판정문을 중재인의 서명과 중재위원회의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3명의 중재인이 분쟁을 심리한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중재인은 판정문에 서명하지 않으며 중재심리조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일·중·러시아의 경우는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중재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을 받아들여 공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분쟁해결이 불가능 할 수 있다.⁶⁶⁾

(3) 중재판정 형식과 내용

한국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판정문에는 판정 이유, 판정문 작성일자,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원본은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나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판정 이유를 생략 할 수 있다. 다수의견에 따르지 않거나 못하는 일부 중재인이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중재인이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리고 판정은 판정문 작성일자에 기재한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⁶⁷⁾

일본 중재법의 내용은 한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⁶⁸⁾

중국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문은 중재신청취지, 분쟁사실, 판정의 이유, 판정내용, 중재비용 및 중재판정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가 날인해야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사실과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의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중재인은 서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⁶⁹⁾

62) 한국 중재법 제30조.

63) 일본 중재법 제37조.

64) 중국 중재법 제53조.

65) 러시아 국제상사중재법 제29조.

66) 조선 대외중재법 제38조.

67) 한국 중재법 제32조.

68) 일본 중재법 제39조.

69) 중국 중재법 제54조.

러시아 국제 상사 중재법의 규정은 한국·일본과 동일하다.⁷⁰⁾

조선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판정문에는 ①분쟁당사자의 명칭(이름),주소,대표와 대리인 ②중재심리날자,중재인,서기이름 ③사건의 명칭, 중재심리참가정형 ④신청자의 청구내용과 피신청자의 답변내용 ⑤확인된 사실과 증거 ⑥중재에서 의거한 법규범 ⑦사건해결 결론 ⑧중재비용부담관계 ⑨중재판정날자 ⑩이밖의 필요사항을 조선어로 작성(당사자 요구시 번역문 첨부)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가 공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중재인은 판정문에 서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재심리조서에 이유서를 첨부 하여 중재위원회에 내야 한다.⁷¹⁾

한국·일본·러시아의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은 동일하다. 중국은 중재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중재위원회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은 판정문에 중재서기를 기재하도록 한 것, 중재지 규정이 없는 것, 그리고 중재위원회 공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행하는 것,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중재인의 반대 이유서 첨부 등이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다.

(4) 중재판정의 효력

한국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²⁾ 중재판정의 확정성, 최종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일본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⁷³⁾ 한국과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다.

중국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은 작성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⁷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조항에서 중재판정은 확정력을 가지며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에는 인민 법원의 법령에 의거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기한 소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⁷⁵⁾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의 확정성과 최종성을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 중재법에서도 승인과 집행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중재의 확정성과 최종성을 선언한 규정은 없나 기타 내용으로 보아 확정성과 최종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법적 효력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70) 러시아 국제상사중재법 제31조.

71) 조선 대외경제중재법 제36조,제37조,제38조.

72) 한국 중재법 제35조.

73) 일본 중재법 제45조.

74) 중국 중재법 제57조.

75) 중국 중재법 제9조.

5.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 집행

(1) 중재판정 취소의 소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취소의 소는 당사자 일방이 요구하는 경우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요구 대상은

- ① 중재합의 당사자가 준거법에 의하여 무능력자이거나 무효인자
- ②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 통지 못 받아거나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③ 중재합의 대상이 아니거나 벗어난 사실을 다투어 판정한 경우
- ④ 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합의나 본 법에 위배된 경우이다.

그리고 법원 직권 사유는 ① 중재 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 할 수 없는 때 ②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배된 때이다.⁷⁶⁾

일본 중재법에서의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과 동일하다.⁷⁷⁾

중국 중재법에서는, 중재위원회가 소재하는 곳의 중급인민법원에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⁷⁸⁾

- ①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 ②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경우
- ③ 중재 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 ④ 증거가 위조된 경우
- ⑤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고 제출한 증거가 중재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 ⑥ 중재인이 뇌물을 수령하였거나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 기만 행위를 하였거나 법적용을 그르친 경우
- ⑦ 공공질서에 위배된 중재판정의 경우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없는 또 다른 특수한 조항이 있다. 즉 인민 법원이 중재 판정취소의 소를 접수한 후에 중재판정부가 새로운 중재판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판정부에 일정한 기한내 새로운 판정을 할 것을 통지하고 취소의 소를 종료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가 거절할 경우 취소 소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는⁷⁹⁾ 규정이다. 증거 위조, 중재인의 뇌물수령, 기만행위와 특히 법적용을 그르친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어 검토의 대상이 된다.

76) 한국 중재법 제36조.

77) 일본 중재법 제44조.

78) 중국 중재법 제58조.

79) 중국 중재법 제61조.

러시아 국제상사중재법의 규정의 특징은 러시아 법원에서 중재판정부에게 중재절차 재개나 중재판정부견해가 취소사유를 소거할 수 있는 조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취소의 소 절차를 정지 할 수 있는 규정⁸⁰⁾이 있는 점이다.

조선 대외중재법에서는 잘못 내려졌다고 인정하는 판정은 해당 재판기관에 취소시켜 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¹⁾ 본 규정에서 잘못 내려졌다고 인정하는 판정 범위가 본안 판정내용도 포함되는지 등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중재의 실효성까지 불확실하다.

(2)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한국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의 판결에 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판정문과 중재합의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중재 판정은 중재판정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며, 외국 중재판정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는 동협약에 적용을 받아 승인 집행이 된다.⁸²⁾ 그러나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는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중재권한 존재여부, 방어권보장을 위한 송달, 공서약속, 상호보증 등이 보장된 경우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다.⁸³⁾

일본 중재법에서는 승인의 대상과 승인 및 집행의 절차는 한국과 같으나 한국은 국내 중재와 외국중재를 구분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⁸⁴⁾

중국 중재법은 승인에 대한 요건, 구비서류 등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집행신청 조항만 있다. 즉, 동법에서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⁵⁾

러시아 국제상사중재법에서는 일본과 동일하게 국내중재와 외국중재의 구별이 없이 승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⁸⁶⁾

조선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판정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거주지나 재산이 있는 지역의 재판기관에 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⁷⁾ 승인, 집행 절차나 구비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집행신청 가능 조항만 있고, 집행 강제조항은 없다.

80) 러시아 국제상사중재법 제34조.

81) 조선 대외경제중재법 제41조.

82) 한국 중재법 제37조, 제38조.

83) 한국 중재법 제39조, 민사소송법제217조.

84) 일본 중재법 제45조, 제46조.

85) 중국 중재법 제62조.

86) 러시아 국제상사중재법 제35조, 제36조.

87) 조선 대외경제중재법 제42조.